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83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 의 자 : 문대림 · 임호선 · 김한규
이병진 · 이원택 · 이언주
김 윤 · 부승찬 · 문금주
위성곤 · 양문석 · 박지원
전종덕 · 최민희 · 서삼석
최혁진 · 김재원 · 전진숙
윤준병 · 허성무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3사건 및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또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4·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책임자들이 국가적 영예를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서훈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4·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

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명예 제도의 불명예를 제거하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명예를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며, 희생자 명예회복의 법적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서훈 취소 등) 정부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제주4·3사건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13조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1조(벌칙) ①·② (생 략) ③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 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u><신 설></u> ④ (생 략)	<u>제21조의4(서훈 취소 등) 정부는</u> <u>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상훈</u> <u>(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u> <u>사한 결과 오로지 제주4·3사</u> <u>건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u> <u>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u> <u>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u> <u>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u> 제3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u>----- -----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 을 누설한 사람 2. 제13조를 위반하여 허위 사 실을 유포한 사람 ④ (현행과 같음)